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승차구매시설 관련 사고 현황 등 교통사고 통계 작성 의무화〉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2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7. 3.
3. 회부연월일 : 2024.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우 현재 매년 작성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통계의 내용으로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과 함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45조의3(교통사고 통계의 작성·관리) ① 경찰청장은 효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u>

현재 경찰청은 「통계법」 제15조¹⁾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승인통계인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을 매년 작성·공표하고 있음. 위 통계에는 교통사고건수, 사망건수, 사망자와 부상자,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수 등 개정안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고의 분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경찰청장의 통계작성·관리 의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법률에 규정을 두더라도 교통사고 통계 원표의 세부 항목은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보다 그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은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도로점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²⁾,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부천시 등 4개

1)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³⁾를 제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의무 등을 정하고 있음.

경찰청은 현재도 이미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유형별 총 60개 세부항목의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교통사고 통계와 달리,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통계만 특별히 도로교통법에 별도의 명문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

- 2)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 ⑤ (생략)

- 3)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등